

- 제2건국을 위한 교육 : 8회 1,545명
 - 강사초청 직원특별교육
 - 기관장(사무처장) 교육
- 정신 및 소양교육 : 10회 1,942명
 -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교육

7. 職員 士氣昂揚

사무처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99. 직원 후생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 고취

- 全職員을 對象으로 한 士氣振作事業
 - 직원체육대회(춘계·추계) 경비지원 : 2회 1,960천원
 - 연말 직원(기능직 79명) 격려 : 1회 4,179천원
 - 직원동호회(8개클럽) 지원 : 4회 7,050천원
 - ※ 등산, 볼링, 테니스, 꽃꽂이, 단전호흡, 영화감상, 낚시 등
 - 체력단련실 장비 14종 21개 구입 : 1회 5,088천원
 - 결혼을 하는 직원에게 축하 선물 전달 : 7명 283천원
 - 직계존비속 경조사비 : 8명 310천원
 - 직원장학회 운영(적립총액) : 18,811천원
 - ※ 2,000만원이상 적립후 이자수입으로 자녀직원증 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예정
 -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숙초) 및 콘도시설 이용 : 58명
- 生活이 어려운 職員을 對象으로 한 士氣振作事業
 - 대가족을 부양하며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 20명 2,000천원
 - 직원 자녀 학자금 대부 알선 : 22명 63,790천원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99회계년도 집행결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이 4.4%임에 비해 의회사무처 불용액 비율은 9.3%로서 '97회계년도에 이어 반복적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97

: 13.2%, '98 : 9.3%, '99 : 9.3%)

-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 결과 발생한 불용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긴 하나 신년도에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시로 예산집행 가능액을 점검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행정과목(세항·세세항·목) 상호간에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번 결산에 반영된 1억 3,520만원은 IMF로 인하여 삭감된 사무처 직원의 가계지원비 소요예산을 불용이 예상되는 포상금에서 적용한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임.

200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사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서울특별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조 9,441억원 대비 6.5% 증가된 10조 5,948억원임.
 -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본예산 사업중 요율 및 기준변동에 따른 기준사업비 부족분과 월드컵, 시설물 안전관리, 걷고 싶은 거리조성, 청소년 특별대책 등 시정현안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
총 계	105,948	99,441	6,507	6.5
일반회계	68,499	63,560	4,939	7.8
특별회계	37,449	35,881	1,568	4.4

2. 2000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4억 9,587만원 대비 3.3%인 4억 5,059만원이 증가된 139억 4,646만원임.
 - 예산과목별로는 의사운영비에서는 1억 7,341만원이 감소되고 의정활동비에서는 6

억 2,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임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가율 (%)
총계	13,946,462	13,495,869	450,593	3.3
의사 운영	10,160,730	10,334,137	△173,407	△1.7
의정 활동	3,785,732	3,161,732	624,000	19.7

○ 증감내용은 당초 의원용 노트북PC 및 프린터를 구매할 예정으로 예산(3억 5,4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임차함에 따라 감소된 예산(1억 7,341만원)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기준액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족분 6억 2,400만(의정활동비 3억 7,440만원, 회기수당 2억 4,960만원)을 계상한 것임.

3. 검토의견

금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용 노트북 PC와 프린터 구매계획을 임차로 전환함에 따른 절감예산의 감액과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기준액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